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30일 19시 27분



# 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대행법인 등의 자격요건	3

## 대행법인 등의 자격요건

2014.04.17 조회수 605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04
담당부서	교통행정과
상위법령	도로교통법 제36조
규칙	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등록사유	경찰교통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2007-02-09
규제시행/폐지일	2007-02-09
규제목적	견인자동차 관리를 위한 자격의 기준
규제내용	제4조(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) ①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. ②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「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」제3조 규정에 의거 등록을 받고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6조 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. ③ 대행법인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견인대행업 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영업소 재지를 둔자이어야 한다.
등록후변동결과	○ 2012. 7.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

목록

이전글

< 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02

다음글 >

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06

# 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